

#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양관리 조례안

[업셋별 의원 발의]

의안번호	2520
------	------

발의일자 : 2024. 4. 15.

발 의 자 : 업셋별 의원

찬 성 자 : 이인식 의원

##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생애주기별 올바른 성장 및 건강한 삶 영위를 위하여 섭취하는 음식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정책의 제공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 라. 영양·식생활 교육사업(안 제5조)
- 마.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안 제6조)
- 바. 전통 식생활 문화 체험 활성화(안 제7조)
- 사. 재정지원, 교육 재료비 및 교육 재료비 감면(안 제8조 ~ 안 제10조)

아. 민·관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영양관리법」

나. 예산조치: 필요시 조치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2) 입법예고: 2024. 4. 16. ~ 2024. 4 . 22.

##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양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영양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양”이란 사람이 올바른 성장과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먹거리를 통해 섭취해야 하는 성분을 의미한다.
2.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 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3.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영양관리사업”이란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 주기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상담·서비스제공 등의 사업을 말한다.
5.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 만한 전통적이

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6. “영양취약계층”이란 생애주기 및 사회·환경적 특성에 따라 영양 관리가 취약해지기 쉬운 계층을 말하며, 영유아·임산부·어린이·노인·노숙인·장애인·만성질환자·저소득층·다문화·새터민 및 1인가구 등을 말한다.
7. “섭취 장애”란 정신적, 신체적으로 음식을 거부하거나 씹고, 삼키기 어려운 상태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생애주기별 영양 관리 정책 수립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 사회·경제적, 성별, 인종, 세대, 직업 등에 차별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전통 식생활의 문화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영양관리 사업에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국민영양관리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영양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다음 각 목의 영양사업 추진계획

가. 제5조에 따른 영양·식생활 교육사업

나. 제6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

다. 제7조에 따른 전통 식생활 문화 체험 활성화

4.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영양·식생활 교육사업)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영양·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양·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6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영양취약계층의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및 장애인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

3. 생활습관 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
4. 섭취 장애가 있는 구민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

제7조(전통 식생활 문화 체험 활성화) 구청장은 우수한 한국형 식생활 확산을 통하여 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세계화하고, 지속 가능한 식생활에 기여하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영양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 재료비 등) 구청장은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이 용자로부터 재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 재료비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재료비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3.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자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1. 제6조에 해당하는 영양취약계층 또는 이를 지원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의 경우

2. 영양지원정책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1조(민관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영양관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양관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의 보건·복지·의료·교육 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 법령

##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 2024. 7. 3.] [법률 제19886호, 2024. 1. 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
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영양관리사업”이란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영양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8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영양·식생활 교육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양·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양·식생활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24. 1. 2.>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제15조(영양사의 면허)** ①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18. 12. 11.>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2. 외국에서 영양사면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를 받은 사람
  3. 외국의 영양사 양성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한 사람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시험의 관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영양사 면허와 국가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응시자격의 제한 등)** ①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나 영양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회의 범위에서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23.]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8. 12. 11.>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영양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7조(영양사의 업무)**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증진 및 환자를 위한 영양·식생활 교육 및 상담
2. 식품영양정보의 제공
3. 식단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4.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5.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6.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7.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위생교육

**제18조(면허의 등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의 면허를 부여할 때에는 영양사 면허대장에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증 교부 신청일 기준으로 제1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면허 등록 및 면허증 교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2. 3.>

②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면허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면허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4. 7.>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4. 7.>

④ 제1항에 따른 면허의 등록 및 면허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4. 7.>

**제19조(명칭사용의 금지)**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영양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20조(보수교육)** ① 보건기관·의료기관·집단급식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영양사는 영양관리수준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기·대상·비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실태 등의 신고)** ① 영양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제1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영양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5. 23.]

**제21조(면허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1.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항에 따른 면허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양사의 업무를 하는 경우

3. 제2항에 따라 3회 이상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영양사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2.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한 경우

③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5. 23.>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면허취소처분 또는 제2항의 면허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가 제2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12. 5. 23.>

**제22조(영양사협회)** ① 영양사는 영양에 관한 연구, 영양사의 윤리 확립 및 영양사의 권익증진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양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관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양관리사업에 드는 경비 중 일부에 대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의 수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③ 영양사의 면허를 받거나 면허증을 재교부받으려는 사람 또는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④ 제15조제2항에 따라 영양사 국가시험 관리를 위탁받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